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29호

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고시 철회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93(2024.10.17.)호로 고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에 대하여 「행정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사정변경(판결)으로 이를 철회하고자 합니다.

2025년 3월 13일

서울특별시

1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

가. 구역명칭 : 길음시장정비구역

2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

구분	구역명칭	위치	면적 (㎡)	비고
신설	길음시장 시장정비구역	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-8번지 외 7필지	10,470	인접지역 포함

3. 시장정비사업 시행자

가. 명칭 : 길음시장정비사업조합

4. 철회내용 및 사유

가. 철회내용 :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와 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철회 ※ 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93(2024.10.17.)호]

나. 철회사유 : 「행정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사정변경(행정소송 판결 결과)에 따른 실효고시 철회

5.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대한 사항

가.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94(2020.09.24.)호와 같음